

[(Core Convention) 비준여부 및 효력발생시기]

협약분류			비준여부	효력발생시기
핵심 협약 (core conven- tions)	결사의 자유	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(제87호)	비준	2022.4.20.
		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(제98호)		
	강제 근로	강제근로에 관한 협약(제29호)	미비준	—
		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(제105호)		
	차별 금지	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 한 협약(제100호)	비준	이미 효력발생
		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(제111 호)		
	아동 근로	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(제138호)		
		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(제182호)		

※ ILO핵심협약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, 정리해서 드립니다. 그간 비준하지 않았던 ILO핵심협약중 3개의 협약을 비준하였고, 2021.4.20.자로 ILO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이 열렸습니다.

하지만, ILO핵심협약은 ILO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1년, 즉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

즉 아직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따라서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지만, 출제되는 경우 비준여부와 효력발생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시
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